

서울고등법원 2013. 8. 28 선고 2013나12947 판결 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,항소인 a종교단체

1.b종교단체

2.c

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1.10.선고 2011가합634 판결

변론종결 2013.7.10.

판결선고 2013.8.28

주 문

- 1.원고의 항소를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2.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청구취지

가.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

1)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.6.18.접수 제78883호로 마친 ,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.10.22.접수 제70407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소의 말소등기절차를

이행하라.

2)예비적으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

1985.11.6.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).

나.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

예비적 청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.6.18. 접수 제78883호로 마친,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.10.22.접수 제70407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.

이 유

1.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

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,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

■제1심판결서 제4쪽 제4행의 "대한불교교계종"을 "대한불교조계종"으로 고친다.

■제1심판결서 제5쪽 제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"라.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의 연혁

1)경기 고양군 u답 4,204평(이하'이 사건 모토지'라고 한다)은 1959.11.27.v답 1,203평, w답 847평, x답 1,293평, y답 861평으로 분할되었다.

2)1975.10.6. 별지 목록 기재 1토지는 위 v 답 1,203평으로부터 ,별지 목록 기재 2,3 토지는 위 x답 1,293평(위 v 토지와 합하여,이하'이 사건 분할 전 토지'라고 한다)으로부터 각 분필되었다.

마.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작관계

원고는 1965.11.6.소작인 z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v토지를 소작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2,3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x토지 를 각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바.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의 등기부 현황

1)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44.12.6.접수 제35940호로 'd'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후, 2010.6.18.접수 제78883호로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위 d 의 명칭을 'b'(이 사건의 주위적 피고이다)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.

2)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는, 같은 등기소 1929.8.2.접수 제39036호로 'd'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1.10.22. 접수 제70407호로 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위 d 명칭을 'o' (주위적 피고의 명칭인 'b'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)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위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합하여 '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'라고 한다).

[인정근거]다툼 없는 사실,갑 제1 내지 5,12 내지 15,28,29호증,을 제1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변론 전체의 취지"

■제1심판결서 제7쪽 제19행의 "피고 d"를 "주위적 피고"로 고친다.

■제1심판결서 제8쪽 제19행의 "피고 d"를 "d"로 고친다.

3.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원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각 토지가 주위적 피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,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를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1965.11.6.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.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, 1985.11.6.위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85.11.6.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판단

1)취득시효의 완성

원고가 1965.11.6.소작인 z 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v토지를 소작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2,3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x 토지를 각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.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은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985.11.6.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주위적 피고의 항면

주위적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위 점유는 무단 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한다.

가)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계어진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8.21.95다28625 판결 등 참조).

나)d가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조임 불교단체로서 등록을 마친 이후인 1965.4.9.p를 주지로 하여

당시 시행 중인 불교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가입함으로써 주위적 피고로 그 명칭이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,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직후 d사찰과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토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주위적 피고의 주지를 임명하였음에도 통합종단에 반대하는 승려와 신도를 중심으로 결성된 원고가 주위적 피고의 위와 같은 권리행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와 같이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다)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 점유는 법리에 비추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점유가 소유이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.

3)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위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,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.

4.결론

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, 당심에서 변경되기 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 사 이광만 판 사 서승렬 판 사 문주형

목 록

1. 고양시 일산서구 Q 답 2714m^2
2. 고양시 일산서구 R 답 1332m^2
3. 고양시 일산서구 S 답 2681m^2
4. 고양시 덕양구 T 도로 13m^2 . 끝.